



지방재정분야 질의·회신

정광량
행정인진부 재정정책과

※ 본 질의회신 사례는 2011년도 지방재정과 관련된 주요 회신사항을 정리한 것임

Q 질의내용 1

- 조례 상 효도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1회 100,000원을 원칙으로 한다고 지급기준을 정하는 것이 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한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

A 회신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예산편성권(지방자치법 제127조, 지방재정법 제36조)을, 지방의회에서는 예산심의·확정권(지방자치법 제39조)을 부여하고 있음
- 이는 의회와 단체장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으로 조례 제정시 한도액과 같이 예산규모 등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동 원리의 균형을 잃을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본 조례에서와 같이 예산 지원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예산안의 심의·확정권한을 통하여 예산액을 조정하는 등 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견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 장의 예산편성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하는 것으로 사료됨

Q 질의내용 2

- 의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시한인 회계연도 개시일 15일 이후에 의결되었을 경우 그 예산안의 법적 효력은?

A 회신내용

○ 지방자치법 제127조제2항에는 “시·도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외 예산안 의결일자를 초과하여 의결할 경우 동 예산안의 법적 효력에 대해 지방자치법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다만, 동법 제131조에 “지방의회에서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고 하고 있으므로, 예산안은 지방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그 시기와 상관없이 효력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Q 질의내용 3

-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 예산안이 의결된 경우 효력발생시점은 본회의 의결 직후인지, 의장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예산안을 이송한 시점인지, 아니면 지방자치법 제133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안의 내용을 고시한 시점인지?

A 회신내용

○ 지방자치법 제 39조 제1항 제1호는 “예산안의 심의·확정”을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예산안은 지방의회의 의결로 “확정” 되게 됩니다.



- 동법 제133조제1항은 “지방의회의 의장은 예산안이 의결되면 3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이송 받으면 지체 없이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단체장에게 이송과 이송 받은 내용을 단체장이 고시하는 것은 확정된 예산을 단순 통보·열람케 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사실행위가 의회가 확정된 예산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행위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 따라서 의결된 예산의 효력발생시점은 지방의회가 예산안을 의결하여 확정된 때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Q 질의내용 4

- 2011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때 단체장이 일부만 동의하고 특정한 사업의 지출예산 증가에 있어 부동의 의사를 표명한 수정발의 예산안을 의회가 가결하였을 경우 동예산안의 법적 효력

A 회신내용

-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는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특정한 사업의 지출예산을 증액함으로써 지출예산 특정 항의 금액을 증가하여 예산안을 의결하였을 경우 동 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 규정을 위반한 예산이며, 동 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0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예산안을 이송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Q 질의내용 5

-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편성한 구청장, 부구청장 등에 대한 업무추진비(기관운영, 시책추진)를 구의회가 전액 삭감한 것은 지방의회의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로 보아 지방자치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재의요구가 가능한지

A 회신내용

-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의거 예산편성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예산의결권은 지방의회에 있으며, 또한 동조 제3항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목(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질의와 같이 업무추진비 예산을 구의회에서 전액 삭감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필요로 하거나, 지방자치법 제107조의 지방의회의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료되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 또는 비상재해로 인한 시설의 응급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삭감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아 재의요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Q 질의내용 6

- 본 예산에 편성하였던 특정 사업비를 여건변화로 추경을 통해 삭감하여 다른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집행부에서 삭감 편성(또는 감액)한 사업비를 시 의회에서 삭감(증액)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저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집행부에서 삭감 요구한 사업비를 의회에서 삭감할 경우 예산이 증액되므로 시 의회 의장이 시장에게 증액 동의를 요청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A 회신내용

- 예산의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고 예산의 심의 의결권은 지방의회에 있으며 집행부는 세입을 추계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원칙적으로 지방의회의 증액으로 인하여 세입을 초과하는 세출예산을 성립하게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세출예산을 증가시킬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위의 집행부는 예산의 편성권의 일환으로 추경에 삭감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



는 집행부의 동의 없이 증액할 수 없다고 판단됨. 다만, 지방의회는 의결권의 일환으로 동 추경안을 부결시킴으로서 지방의회의 의도를 관철시킬 수 있을 것임

Q 질의내용 7

1. 「○○도 범도민 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안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 동 치안협의회의 운영 및 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2. 「○○도 지방경찰청과 소속 경찰서의 지역치안협의회 운영규칙」(경찰청 훈령)에 근거하여 경찰청에 설치된 지역치안 협의회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동 협의회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예산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A 회신내용

(질의 1에 대하여)

- 자치단체 치안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제정 가능여부와 관련된 법제처 유권해석에 의하면,
 - 지역 주민의 안전 및 보호를 위한 환경조성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경찰기관 등과 관할구역 안의 치안업무에 관한 협의 및 조정을 하는 것은 자치사무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협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치안협의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법령에서 특별히 제한하지 않는 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속한다고 하였고,
 - 이미 「경찰법」 제16조에 의한 ‘치안행정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더라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유관기관 인사들로 구성된 ‘지역치안협의회’를 설치하여 지역치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를 한다고 하여 기존 치안행정협의회의 기능이나 역할을 저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치안과 관련된 사항을 경찰기관 등과 협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설치하는 것은 「경찰법」 제16조 및 「지방자치법」 제22조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따라서, 치안협의회의 설치에 필요한 경비와 위원들에 대한 참석수당·여비 등 실비 및 상설기구로서 조직을 설치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운영경비는 법제처 유권해석에서 적시한 자치사무인 ‘치안업무에 대한 협의·조정’,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라고 할

수 있으므로 자치단체가 지출이 가능한 경비라고 할 것입니다.

- 다만, 치안협회의 협의 결과 수행키로 결정된 사업은 반드시 자치사무라고 할 수 없고, 이에 따라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서는 경찰청 등 국가기관 소관의 국가사무인지 자치단체에 속하는 자치사무인지를 우선 명확히 확정된 후 비용부담주체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치안협회가 보조금 지원대상 단체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도 보조사업 지원여부는 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인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제4호의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인지 등을 검토하여 지원하여야 할 것이며, 당해 자치단체의 보조금 조례에 위반되어서도 아니 될 것입니다.

(질의 2에 대하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지출함에 있어서 당해 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하고, 법령에 근거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질의1)에서 검토한 바 있는 법제처 유권해석의 취지도 경찰법에 의한 치안행정협의회와 '별도로' 자치단체에 설치되는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조례의 제정이 가능함을 밝힌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문의하신 협의회가 경찰법 및 경찰청 훈령 등 경찰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경찰청에 설치된 협의회인 경우에는 이를 경찰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자치단체가 그 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2009년도 국정감사에서 경찰이 각종 치안 인프라 구축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전가하는 것에 대해 비용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지적한 바 있으므로,
 - 경찰 수행사무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해석례 〉 - 법제처 안건번호 10-0154,
회신일자 2010. 7. 5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치안과 관련된 사항을 경찰기관 등과 협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경찰법」 제16조 및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Q 질의내용 8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치안과 관련된 사항을 경찰기관 등과 협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설치하는 것이 「경찰법」 제16조 및 「지방자치법」 제22조 등에 위반되는지?

A 회신내용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치안과 관련된 사항을 경찰기관 등과 협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설치하는 것이 「경찰법」 제16조 및 「지방자치법」 제22조 등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이유

「경찰법」 제16조제1항에서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 소속하에 치안행정협의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치안행정협의회규정」 제2조에서 치안행정협의회는 지역안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제1호), 민방위 및 재해대책 운영에 관한 사항(제2호), 질서확립운동 등 지역사회운동의 효율적 추진에 관한 사항(제3호), 지역주민과 경찰간의 협조 및 요망사항(제4호) 및 기타 지방행정과 치안행정간 상호지원에 관한 사항과 시·도지사 및 지방경찰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제5호)에 관하여 협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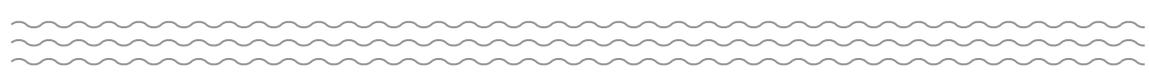
여기서 「경찰법」 제16조 및 「치안행정협의회규정」에 따른 치안행정협의회와 별도로 치안과 관련된 사항을 경찰기관 등과 협의하기 위한 협의체(이하 “지역치안협의회”라고 함)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운영하는 것이 「경찰법」 제16조 및 「지방자치법」 제22조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우선, 지역치안협의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소관 사무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치안행정협의회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함으로써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치안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이고(「경찰법」 제16조제1항),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안의 주민의 생활과 관련된 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지역 주민의 안전 및 보호를 위한 환경조성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경찰기관 등과 관할 구역 안의 치안업무에 관한 협의 및 조정을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협의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치안협의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어 제한하지 않는 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속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역치안협의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경찰법」 제16조에 위배되는지 살펴보면, 조례가 규율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도 조례가 법령과 별도의 목적에 기하여 규율함을 의도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에 의하여 법령의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전혀 저해하는 바가 없는 때 또는 양자가 동일한 목적으로 출발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국가의 법령이 반드시 그 규정에 의하여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려는 취지가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라고 해석되는 때에는 그 조례가 국가의 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6추52판결 등 참조).

그런데, 「경찰법」 제16조에서는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함) 또는 시·군·구에 지역치안협의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아니하고, 한편 치안행정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더라도 시·도 또는 시·군·구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유관기관 인사들로 구성된 지역치안협의회를 설치하여 지역치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를 한다고 하여 치안행정협의회 기능이나 역할을 저해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또한, 지역치안협의회가 관할구역 안의 주민의 안전 및 보호를 위해 지역치안업무를 협



의·조정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와 같은 협의체의 설치가 반드시 「경찰법」 등 법령에 따라 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지역 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치안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치안협의회를 설치하는 것이 「경찰법」 제16조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치안과 관련된 사항을 경찰기관 등과 협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설치하는 것은 「경찰법」 제16조 및 「지방자치법」 제22조 등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 ▶ 경찰법 제16조
- ▶ 치안행정협의회규정 제2조
- ▶ 치안행정협의회규정 제3조
- ▶ 지방자치법 제9조
- ▶ 지방자치법 제22조

Q 질의내용 9

-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고등학교나 사립대학을 설치하기 위한 학교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지?

A 회신내용

- 지방자치단체는 경비를 지출함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하고 법령에 근거없이 국가 또는 다른 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습니다.(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
 - 이는 국가·광역 자치단체·기초 자치단체의 경비부담 구분을 명확히 하여 소관사무에 대해서만 경비 지출을 허용함으로써 자치단체의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따라서 기초 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사립고등학교 또는 사립대학을 설치하기 위한 학교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학교 법인 설립 사무가 기초 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제5호 및 제121조, 그리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초·중·고등학교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는 광역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고등

교육법」 제3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공립학교(대학포함)를 그 설립 주체에 따라 시립학교와 도립학교로 구분하고 있어 대학을 설립·경영할 수 있는 주체 역시 광역자치단체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최소한 광역단위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간 교육서비스의 불균형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 한편, 사립학교는 공교육 실시를 위한 재정적 투자능력의 한계를 자발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2009.4.30 2005헌바101 전원재판부) 법률이 정하는 요건하에 그 설치를 허용하는 것으로 그 설치·운영 또는 관리·감독의 주체와 범위에 있어 여타 공립 교육기관과 달리 볼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 즉 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사립학교를 설치·운영하는 사무 역시 공립학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초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닙니다.
 - * 사립학교법 제4조는 사립학교의 관할범위를 정하면서 사립 초·중·고등학교 등은 그 주소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감이, 사립대학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지도·감독하도록 규정
- 학교법인 설립사무와 학교의 설치·사무를 구분하여 학교법인 설립 사무는 기초자치단체도 수행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
- 「사립학교법」 제3조는 학교법인이어야만 사립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설치·경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학교법인을 설립하는 행위는 사립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행위와 분리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 동법 제2조제1항에서도 “사립학교”를 공공단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학교는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있음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결론적으로 학교법인을 설립하는 행위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무라 할 수 없고 이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예산으로 학교법인을 설립할 수 없습니다.

Q 질의내용 10

- △△시에서 “△△방재산업단지 조성사업” 을 추진하기 위하여 추진당사자(○○도지사, ○○도개발공사장, △△시장)간 세부협약을 맺었는 바, 미분양 용지 발생 시 △△시가 인수하도록



협약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예산외 의무부담)에 해당되어 지방의회의결을 받아야 되는지 여부

A 회신내용

- 일반적으로 채무부담행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인 것으로 금전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 외에도 물건의 인도 또는 특정의 행위·부작용 등을 포함한다고 판단할 때 「지방자치법」 제39조에서 규정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 이란 일반적인 채무부담행위의 범주내로 보아야 할 것임
 - 다만, 「지방재정법」 제44조의 채무부담행위는 예산의 일부로써 다루어지는 것으로 금전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음
- 동 질의는 채무의 확정 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향후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큰 부담을 초래하는 금전급부를 목적으로 한 행위로써, 「지방재정법」 제44조에서 규정한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경우와 세출예산·명시이월비 또는 계속비 총액의 범위안의 경우가 아닌 채무부담행위이므로 사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할 것으로 판단 됨
 - 이 경우는 채무확정 금액이 없는 관계로 미리 예산으로 의결을 받을 수 없으므로 예산과는 달리 별도 안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됨

Q 질의내용 11

- ○○도지사, ○○시장 및 ○○도개발공사사장 간 체결한 「○○방재산업단지 조성사업 세부협약서」 제11조제2항의 미분양용지 발생 시 삼척시의 미분양용지 인수 및 미인수 용지에 대한 금융비용의 부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 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지방재정법」 제44조에 따른 “채무부담행위” 에 해당되는지?

A 회신내용

○○도지사, ○○시장 및 ○○도개발공사사장 간 체결한 「○○방재산업단지 조성사업 세부협약

서」 제11조제2항의 미분양용지 발생 시 삼척시의 미분양용지 인수 및 미인수 용지에 대한 금융비용의 부담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해당합니다.

이유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르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무부담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고(제44조제1항), 채무부담행위를 한 때에는 상환하는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드시 계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44조제2항). ○○도지사·○○시장 및 ○○도개발공사사장 간에 체결한 「○○방재산업단지 조성사업 세부협약서」(이하 “세부협약서”라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산업단지 준공시점에서 미분양용지가 발생하면 ○○시장과 ○○도개발공사사장은 공동으로 분양업무를 1년간 추가로 시행하고, 그 이후에도 미분양용지가 발생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인수계획을 확정 한 후 그 계획에 따라 ○○시장이 미분양용지를 인수하며, ○○시장은 미인수한 용지에 대하여 ○○도개발공사사장이 부담하는 실제 금융비용을 6개월 단위로 ○○도개발공사사장에게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세부협약서 제11조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맺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지방재정법」 제44조에 따른 “채무부담행위”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지방재정법」 제2조제5호,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2항에 따르면 “채무부담행위”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행위이어야 하고,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상환하는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드시 계상되어야 하는바, 이 경우에 채무부담의 내용 및 금액을 구체적으로 예상하여 예산안의 예산총칙에 편성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부협약서 제11조에 따르면 ○○시가 부담할 의무부담의 내용은 산업단지 준공 후 1년이 되는 시점에 미분양용지가 없을 경우에는 미분양용지 인수의무가 발생하지 않게 되어 세출예산에 편성할 필요도 없게 되고, 산업단지 준공 후 1년이 되는 시점에 미분양용지가 발생할 경우에 미분양용지 인수의 의무 등이 발생하나, 세부협약서를 체결한 시



점에서는 미분양용지가 발생할지, 미분양용지가 얼마나 될지, 그에 따른 인수비용 또는 미인수 시 이자비용 등의 금융비용이 얼마나 될지 등을 예상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의무부담의 내용 및 금액을 구체적으로 예상할 수 없어서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가 세부협약서 제11조에 따라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기로 한 것을 「지방재정법」 제44조에 따른 채무부담행위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다만, 산업단지 준공 후 미분양용지 발생 시 인수비용 또는 미인수 시 이자비용 등은 세부협약서를 체결한 회계연도에서 집행되지는 아니하지만, 다음 회계연도 이후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예산에서 집행되어야 하므로 예산을 수반할 가능성이 있는 계약으로서 이러한 계약은 지방재정으로 이행되어야 할 의무로서, 지방재정의 부담과 비재정적인 의무부담을 포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지사, ○○시장 및 ○○도개발공사사장 간 체결한 세부협약서 제11조제2항의 미분양용지 발생 시 ○○시의 미분양용지 인수 및 미인수 용지에 대한 금융비용의 부담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해당합니다.

Q 질의내용 12

- 2010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예산관련 토론회·예산설명회를 개최하고, 도민 및 교직원단체 소속원으로 구성된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에 의한 조례를 제정하지 아니하고는 이러한 참여제도를 운영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

A 회신내용

- 지방재정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에 따른 동시행령 제46조제1항은 그 방법으로서는 i)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ii)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iii)사업공모, iv)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

로 정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동조 제3항은 그 밖에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각 자치단체 장은 위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간담회·설문조사·사업공모 외에도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주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참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구체적인 절차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임
- 따라서, 자치단체장은 위 법령에서 정하는 외의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예산편성과정의 주민참여가 활성화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위 법령에 직접 근거한 토론회·설명회 등은 조례의 제정 이전에도 가능한 것임

Q 질의내용 13

- ○○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서 위원회 활동목적에 참고하고자 2010년 예산요구서(각 부서의 편성전 예산요구서)를 자료 요구하였습니다.
- 시는 이에 대한 답변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제5호에 규정하고 있는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이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 정보라 하여 예산요구서를 공개할 수 없다고 합니다.
- 또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예산안은 의회의 예산심의과정에서 취소될 우려가 있는 미성숙한 자료이고 지역개발에 관한 정보도 포함되어있어 특정인의 부당한 이익이나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하여 비공개라 합니다
- ○○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6조 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1. 예산편성 지침에 대한 의견수렴
 2. 예산편성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3. 시민들을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교육실시
 4. 총회, 분과위원회, 공청회 개최 등에 관한 활동



- 5. 시민참여예산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방안 연구활동
- 6. 그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 과연 위와 같은 목적으로 활동하는 시민참여예산위원회에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타당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위원회 기능 1, 2호)에 의거 위원회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능이지 심의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2010년 예산요구서(각부서의 편성전 예산요구서) 자료요구에 응하지 않는 시의 입장이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제정한 시민참여예산제도 본래 취지와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A 회신내용

- 정보공개법령에 근거하여 예산요구서를 정보공개요청 하였다면, 관련법령에 따라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주민참여예산제의 일환으로서 그 참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지방재정법령에 의하여야 할 것인 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는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는 자치단체가 그 예산의 편성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하도록 조례를 정하였다면, 그 조례를 정한 취지에 맞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이나, 어떠한 방식으로 주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할 것인지는 조례를 정한 당해 자치단체가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Q 질의내용 14

- ○○군의 축산분뇨·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신규 추진사업 계획을 질의자가 증설사업으로 제안하여 ○○군이 이를 수용 건설중(2,500㎡→6,000㎡)에 있으며, 이를 계기로 동 처리장 증설사업비 200억원과 장류?인계농공단지의 하수관거(수질개선)사업비 100

억원 등 총 300억원의 국비 지원사업을 유치시킨 민간인 기여자임. 이와 관련하여 아래사항을 질의함.

- 가. 지방재정법 제48조의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증대된 경우 및 기여자의 범위
- 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서 “특별한 노력을 통하여”의 범위
- 다. 지방자치단체 국고 유치결정에 있어 민간인 신분으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기여자에게도 예산성과금 지급이 가능한지?
- 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에게 포상금인 성과상여금(인센티브)을 어떤 목적으로 지급하는지 그 이유
- 마.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이하 “운영규칙”) 제3조의 적용범위에서 민간인 신분으로 특별한 활동을 통하여 결정적인 역할을 한 질의자가 기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 바. “운영규칙” 제3조(적용범위)제4항의 성과상여금과 예산성과금의 구분방법
- 사. “운영규칙” 제2조(정의)제5호 후단의 “자체재원”의 범위
- 아. “운영규칙” 제12조(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제2항제6호 규정에 민간인 기여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 자. 질의자가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군으로부터 본인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방안과 해당법률은?

A 회신내용

가. 「지방재정법」 제48조의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증대된 경우 및 기여자의 범위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0조(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요건)제1항에 예산이 절약된 경우를 “자발적인 노력을 통하여 정원감축,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업무성과를 종전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유지하면서 경비를 적게 사용하여 예산이 남게된 경우”로 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는 수입이 증대된 경우를 “특별한 노력을 통하여 새로운 세입원의 발굴 또는 제도개선 등으로 세입이 증대된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48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증대된 경우에는 절약된 예산 또는 증대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기여한 자”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외 일반 국민 및 기관·단체 등 법인체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임



니다.

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서 “특별한 노력을 통하여”의 범위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수입이 증대된 경우를 “특별한 노력을 통하여 새로운 세입원의 발굴 또는 제도개선 등으로 수입이 증대된 경우”로 정의하고 있는 바, 본 조항에서의 “특별한 노력”의 범위는 일종의 “불확정 개념”으로서 수입증대의 내용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구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사안입니다. 따라서, 동 법령을 일반적으로 해석하여 그 범위를 정의하는 것은 곤란한 측면이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국고 유치결정에 있어 민간인 신분으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기여자에게도 예산성과금 지급이 가능한지?

- 예산성과금 지급 대상은 위 ‘가.’의 답변내용과 같이 민간인도 포함됩니다. 다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는 수입이 증대된 경우를 “특별한 노력을 통하여 새로운 세입원의 발굴 또는 제도개선 등으로 수입이 증대된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운영규칙” 제2조제5호에는 “수입”이란 지방채발행수입금 및 차입금을 제외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자체자원”은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등 법적 근거에 따라 강제로 징수하는 지방세와 상·하수도, 재산임대, 증명서 발급 등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서비스 활동을 통하여 자체적으로 징수하는 세외수입 등을 의미하며, “의존자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재원중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08.3.4)」 제4조(자체수입), 제5조(의존자원) 등 참조

- 따라서, 민간인도 예산성과금의 지급대상에 해당되나, 자체재원이 아닌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유치는 현행 법령상 예산 성과금 지급 요건인 ‘수입증대’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는 민간인뿐만 아니라 공무원에게도 적용됩니다. 다만, 귀하께서 주장하시는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 이에 대한 예산 성과금 지급 여부는 국고보조금의 유치노력이 아닌 축산분뇨·하수종말처리장의 건설과 관련하여 귀하의 제안에 따라 기존 시설물의 재활용 및 증설 등으로 인한 예산절감과 이에 따른 파급효과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군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자체·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결정할 사안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 지방공무원들에게 포상금인 성과상여금(인센티브)을 어떤 목적으로 지급하는지 그 이유

- 지방공무원의 성과상여금은 지방공무원 사회에 경쟁원리를 도입하고 성과창출의 제고 등을 위

해 「지방공무원법(§ 46)」, 「지방공무원보수규정(§ 30)」 등을 근거로 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6조의2)」에 따라 연 1회 성과평가(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개인별로 차등지급(S, A, B, C등급)하는 방법과 부서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마. “운영규칙” 제3조의 적용범위에서 민간인 신분으로 특별한 활동을 통하여 결정적인 역할을 한 질의자가 기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 “운영규칙” 제3조(적용범위)는 동 규칙을 운영·적용하여야 하는 주체(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보조기관·좌기관의 범위, 동일 사유로 예산 성과금을 병급 지급할 수 없다는 원칙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운영규칙” 제3조는 귀하가 예산성과금 지급 대상인 “기여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데 근거가 되는 조항은 아닙니다.

바. “운영규칙” 제3조(적용범위)제4항의 성과상여금과 예산성과금의 구분방법

- “운영규칙” 제3조제4항에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상여금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 이 규칙에 의한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상여금”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의한 ‘창안상여금’ 또는, 「국민제안규정」 제13조에 의한 ‘부상금’ 등이 해당되며, “예산성과금”은 「지방재정법」 제48조 등에 의해 지급하는 성과금을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사. “운영규칙” 제2조(정의)제5호 후단의 “자체재원”의 범위

- 상기 “다.”의 답변으로 같음합니다.

아. “운영규칙” 제12조(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제2항제6호 규정에 민간인 기여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 운영규칙 제12조제2항제6호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예산낭비를 신고하거나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관한 제안을 제출한 자”를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직접 “기여한 자”의 하나의 양태로 정의하고 있는 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예산낭비를 신고하거나 관련 제안을 제출하는 것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과 민간인을 제외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민간인 기여자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질의자가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군으로부터 본인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방안과 해당법률은?



-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은 「지방재정법」 제48조(예산절약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 등) 등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증대된 경우 이에 기여한 자에게 절약된 예산 또는 증대된 수입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며, 귀하가 예산 성과금의 지급 대상자인지의 여부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군이 귀하께서 예산의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관한 제안을 제출하여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사실관계와 그 기여도, 효과, 창의성 등에 대해 “운영규칙” 제11조에 의한 ‘자체심사위원회’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 규정에 의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결정할 사항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Q 질의내용 15

- 최종 추경예산승인 후 교부된 경비에 대한 처리 기준은

A 회신내용

- 성립전 집행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국가 또는 시도가 용도를 지정하여 소요액 전액을 교부한 경우 및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로 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소요액 전액을 교부한 경우란 자금이 교부된 경우로 자원부담 관계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음
- 한편, 지방자치단체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의 처리방법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처리기준이 상이하여 지방예산의 효율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통계처리상 등 일부 문제점이 있어, 지방예산의 통일성과 당초 교부목적 달성을 위해 최종 추경예산성립 후 교부된 경비에 대한 처리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어
- 이러한 처리기준으로 최종 추경예산편성 시 예산총칙에 명시하여 간주처리(의회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간주)하되 간주처리 동의 여부는 지방의회의 권한 사항이며, 이 경우 간주처리된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이월가능하고, 간주처리 후 지방의회에 간주처리 내용을 보고하여 함. 다만, 지방비부담이 있는 보조금 등의 경우 지방의회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함
※재정정책팀-454('05.4.21)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교부된 경비에 대한 처리기준」 참조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교부된 경비에 대한 처리기준 통보

1. 지방자치단체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의 처리방법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별로 당해연도 세입계상, 익년도 세입계상 또는 당해 연도 간주처리 등 처리기준이 상이하여 지방예산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는 바,
 2. 지방예산운영의 통일성과 당초 교부목적 달성을 위해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교부된 경비에 대한 처리기준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지방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가. 처리기준
- 최종 추경예산편성시 예산총칙에 명시하여 간주처리
 - ※ 간주처리 동의 여부는 지방의회의 권한 사항이며, 이 경우 간주처리된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이월가능
 - 간주처리 후 지방의회에 간주처리내용 보고
 - 다만, 지방비부담이 이는 보조금 등의 경우 지방의회와 협의 추진
- 나. 시행일 : 2005년도 최종 추경예산편성시부터 시행. 끝.

Q 질의내용 16

- 「지방재정법」 제45조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사용규정에 따라 관련 경비를 사용하고 이를 차기 추가 경정예산에 계상하였으나, 당해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삭감의결할 경우 적법성에 대하여

A 회신내용

-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전 사용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자치단체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하여야 함. 다만 예외적으로 「지방재정법」 제45조 단서규정에서 국가 및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고, 동일 회계연도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음
- 이는 국가와 자치단체가 각각 독립된 예산의 운영상황에서 당해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자치단체의 자주재정권이 조화될 수 있도록 ①용도가 지정되고, ②소요전액이 교부된 경우에 한하여 제한된 범위내에서 운용될 수 있도록 현행법에 명시한 것으로
 - 당해 경비를 교부받은 자치단체는 교부된 목적대로 이를 집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지방의회는 사업의 용도와 금액이 결정되어 기집행된 경비를 삭감할 수 없음

- 또한 동 단서조항 후미에 성립전 사용경비는 동일 회계연도 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는 것은 성립전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관한 절차적 조항으로 성립된 사용 경비는 이를 반드시 추경에 계상하여야 한다는 절차적 당위성을 선언한 것임

○ 따라서 ○○군이 신청한 “동계올림픽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보전금 1억원”을 ○○도가 용도와 금액을 정하여 교부내시 하였고, ○○군은 교부된 용도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전에 동계올림픽 무주유치 영상홍보물 제작비로 집행한 경비에 대하여는 ○○군의회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시 이를 삭감할 수 없다고 판단됨

Q 질의내용 17

-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하면 "...다만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 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동일 회계연도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자치단체간 부담금 경우(시→군) 성립전예산승인이 가능한지요
- 사용용도가 명확하게 지정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A 회신내용

- 문의하신 사항은 자치단체간 부담금 예산의 성립전 사용 가능여부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 먼저 「지방재정법」 제45조는 확정된 예산에 대하여 사정변경으로 인한 추가경정예산의 예외적 허용을 규정한 조항으로서, 동조항 단서는 다시 추경예산에 대한 예외로서 성립전 사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이는 법정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 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 외의 성립전 사용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문의하신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위 법령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허용되지 않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Q 질의내용 18

- 예산의 이용 방법은.

A 회신내용

- 예산의 이용은 정책사업간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예산집행에 있어서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용을 필요로 하는 과목·금액·이유 등을 명시한 서류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
- 또는 예산총칙편에 이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의회의 사전 승인을 얻음으로써 이용할 수도 있음
- 이용방법 : 사업부서가 정책사업간 상호 이용할 예산내역을 통계목까지 작성 요구하고 예산 부서는 편성목까지 확정
 - 이용요구 : 사업부서는 통계목단위로 세출예산이용요구서를 작성하고 세출예산집행계획을 수정하여 예산부서에 제출
 - 이용확정 : 사업부서로부터 세출예산이용요구서가 제출된 경우, 예산 부서는 이용처리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을 때에는(지방의회 승인사항) 지체없이 세출예산배정계획을 수정하고 이용 및 수시배정 확정 후 관련부서에 통보

Q 질의내용 19

- 예산의 전용 절차와 방법은

A 회신내용



- 전용절차 : 전용요구(사업부서) ⇒ 심사(예산부서) ⇒ 결정(자치단체장) ⇒ 관계부서에 통지(예산부서)
- 전용방법 : 예산부서는 편성목까지 확정하나, 회계처리 등을 고려하여 통계목까지를 내부적으로 관리
 - 전용요구 : 사업부서는 통계목단위로 세출예산전용 요구서를 작성하고 세출예산집행계획을 수정 하여 예산부서에 제출
 - 전용확정 : 사업부서로부터 세출예산전용요구서가 제출된 경우, 예산 부서는 전용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세출예산배정 계획을 수정하고 전용 및 수시배정 확정 후 관련부서에 통보

Q 질의내용 20

- 「○○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문화재단에 구의 문화예술사업 중 11개 사업을 이관하고 출연금을 교부한 경우, 「○○구 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각 사업별 정산을 하여야 하는지, 또는 위 재단 설립 조례에 따라 사업연도별 결산서만을 제출하면 되는지 여부

A 회신내용

- 자치단체의 출연금은 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어렵거나 민간이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법령에 근거하여 반대급부 없이 행하는 것으로,
 - 특정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한 사업성 경비를 지원하는 보조금과는 달리 그 집행에 대하여 반드시 정산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또한 동 재단 설립조례는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의회에 제출하는 한편, 매사업연도별 결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정산 요구를 하는 것은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 동 재단 출연금이 재단의 특정한 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성 경비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 보조금에 준하여 정산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따라서, 문화재단에 지원한 경비의 정산여부는 자치단체 예산상 출연금으로 편성하여 지원한 경

우라도 당해 경비의 구체적인 지원 목적과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Q 질의내용 21

- '05년 이후 민간 사업자가 매년 개최하던 행사가 후원사의 후원이 중단됨에 따라 ○○시에 예산지원을 요청하여 온 바,
- 기 시행하던 행사의 업체 후원이 중단되었다는 사정이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의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에 해당되는지 여부

A 회신내용

-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는 '보조금을 지출 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 한하여 자치단체가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위 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에 의하면 보조금의 교부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자치단체가 개별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것인지 여부는 위 법령 및 당해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인지 여부 및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 다만, 자치단체가 개별 사업별로 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기존 후원사의 후원이 중단되었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행사를 개최하는 민간단체의 일반적인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질의내용 22

- ○○도에 "○○클럽"이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되어 있어 이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 ① 갑설 : 비영리단체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성격을 불문하고 예산을 지원해도 무방하다.
- ② 을설 : 금년도에 기 지원해준 사업 내역을 볼때 봉사성격외에 불교기념행사 사업비를 신청하여 집행한 결과를 볼때 종교단체로써 예산을 지원할수 없다.
※참고 : 2010년도 상반기 지원사업
- 분다클럽 영주회 집수리 봉사(분다클럽)
- 부처님오신날기념 전도학생 부처님그리기 및 글짓기대회
- ③ 병설 : 단체가 아닌 사업을 선별하여 종교관련 행사 사업비만 지원 할수 없고, 그외 사업비는 지원할 수 있다.

A 회신내용

- 문의하신 비영리단체의 등록이라 함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등록을 의미하시는 것으로 판단되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보조금 지원은 자치단체 민간이전경비 지원과 별개의 지원으로서 상호 관련성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따라서, 종교단체인 경우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되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종교교리 전파를 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된다면 예산편성이 제한되는 것입니다.
- 또한, 종교교리 전파를 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면 예산편성이 제한되고, 동 단체가 어떠한 사업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해당 단체가 특정 종교교리 전파를 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지 여부는 해당 단체의 설립목적과 주요 활동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자치단체가 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Q 질의내용 23

- 예비비 사용관련 제한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8조에 의하면 예비비사용제한으로 업무추진비 및 보조금으로 되어 있는데
 - 국비보조사업의 지방비부담에 관한 규정에 의거 부담하는 지방비 의무부담 보조금에 대해서도 예비비를 쓸 수 없는지 ※참고 : 2010년도 상반기 지원사업

A 회신내용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8조에 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 보조금에 대하여는 예비비 집행을 제한하고 있는 바, 국비보조사업의 지방비부담 부분인 경우에도 보조금인 경우에는 예비비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Q 질의내용 24

- 200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못한 어린이집 신축을 위한 적정부지가 나와, 토지매입 신규사업에 대해 사정변경 또는 예측하지 못한 사업으로 판단하여 2010년도 하반기 수립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조건으로 투·융자 심사 가능여부

A 회신내용

-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매뉴얼에 의거 투·융자심사 의뢰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정변경 또는 예측하지 못한 사업의 경우 차기계획에 반영하는 조건으로 추진이 가능합니다.
- 상기에서 말한 사정변경 또는 예측하지 못한 사업이라 함은 국가 정책사업의 계획변경 또는 연도말 등에 긴급하게 결정된 사업,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가된 사업 등을 뜻하며, 귀 기관에서 추진하고자하는 어린이집 신축사업을 예측하지 못한 사업에 포함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Q 질의내용 25

- 우리시에서는 군부대가 위치해 주민들의 이동통로가 단절된 지역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군부대를 지나는 도로개설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당초 2006년 10월에 전액 자체재원 65억으로 투융자사업 자체심사를 실시하였으나,
 - 군부대 협의난항으로 계획수립 및 투융자심사 이후 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 않던 중 2009년 2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의거 국고보조사업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 국고보조사업 확정 후 재원변경에 따른 재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군과의 협의미비로 인해 도로구간이 확정되지 않아 재심사를 실시하지 못하는 실정이었습니다. 결국 2010년에 이르러 군부대를 우회하는 노선으로 도로위치를 변경하여 사업추진하게 됨에 따라 투융자심사 시기 등에 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최초심사 후 3년이 지났고 도로위치가 수정되었으며, 재원이 변경된 본 사업에 대한 재심사 가능 여부
2. 재심사 대상이라면 실시설계용역 이전 혹은 본공사계약 이전에 재심사를 완료해야 하는지에 대한 심사시기

A 회신내용

-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의 재심사대상 사업은 심사규칙 및 심사매뉴얼에 규정한 바와 같이 투자심사 후 3년간 사업시행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미추진한 사업 등이 해당합니다.
- 동 건의 경우 상기 재심사 대상 조건에 해당 될 뿐만아니라, 재원과 도로구간 등 사업계획이 전체적으로 변경된 사항으로 신규심사에 준하여 심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시말해, 당초 자체심사를 받았으나, 현재 국비 등 의존재원이 추가되었으므로 자체심사가 아닌 의뢰심사(또는 중앙)를 받아야 합니다.
- 아울러 심사시기는 실시설계용역 이전에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Q 질의내용 26

- 전년도에 지방채 발행 한도내에서 2010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을 총액 400억원을 수립했었습니다. - 2010 예산서상 편성되었음(의회승인)(지역개발기금 100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 300억원) 행안부(기재부)에서 승인된 공공자금관리기금 300억원 중 40%인 120억원이 배정액에서 삭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삭감되는 120억원만큼을 다른 자금선(ex:지역개발기금)에서 자금 여유가 있어서 지원이 가능할 때, 다른 자금선에서 지방채 발행이 가능할지요?

2. 다른 자금선에서 지방채 발행이 가능하다면 행안부에 따로 승인을 얻어야 하는지요?
3. 다른 자금선에서 지방채 발행이 가능하다면 의회의 승인을 또 얻어야만 하는지요?

A 회신내용

- 지방채 발행계획이 지방채 발행 한도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서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경우,
 1. 자금차입선을 당초 공자기금에서 다른 자금으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자금차입선 변경에 대하여 행안부의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하는 경우라면 시도와 협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이미 지방채발행계획이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예산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지방의회의 승인을 다시 얻을 필요는 없습니다.

Q 질의내용 27

- 지방자치단체에서 금고를 선정하는 경우에 있어 평가항목의 출연금을 금고지정약정서에 명시한 경우 출연금을 자치단체 세입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A 회신내용

- 「지방재정법」 제34조에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설치한 기금 등을 제외하고는 세입예산에 편성토록 규정하고 있고,
-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행안부 예규 제240호)」의 3. 금고지정 평가기준에 ‘금고지정약정서에 출연 등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에는 금고지정에 대한 대가적 의미의 반대급부에 따른 것으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상의 기부금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질의사항과 같이 금고약정서상에 출연금이 명시된 경우는 약정서에 특약사항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령의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거 세입예산(잡수입)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함



Q 질의내용 28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존속기한)이 있는데요, 신설기금에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개정기금에도 해당되는지

A 회신내용

- 「기금관리기본법」에 있는 기금 일몰규정은 동 법이 시행된 06.1.1. 이후 제정되거나 개정된(혹은 개정될) 조례 모두에 해당됨

Q 질의내용 29

- 기금 존속기간이 없는 주민발의 조례(안)을 제정할 경우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A 회신내용

- 자치단체에서 기금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1항에 기금의 존속 기간을 의무적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일몰제를 통해 무분별한 기금설치를 제한하고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임.
- 기금조례 제정(안)에 기금의 존속기한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기금운용의 효율화를 위한 지방기금법 제4조 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조례 제정(안)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면 수정 발의 등을 통해 지방기금법에 규정한 기금 존속기한을 포함시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됨

Q 질의내용 30

-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하면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재정용자 등에 활용하고자 통합관리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 만약 급하게 일반회계 자금이 부족하여 용자를 하고자 한다면 개별기금 조례에 일반회계에 용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각 기금별로 일반회계에의 용자가 가능한지

A 회신내용

- 기금은 특정 행정목적 수행을 위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의 탄력적인 집행을 위하여 신설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각종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여 재정용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일반회계 부족재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용자하고자 하는 경우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여 용자하여야 하며, 개별기금에서 직접 일반회계에 용자하는 것은 기금설치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Q 질의내용 31

- 통합관리기금의 근본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용자 및 지방채 상환에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일부 자치단체의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는 재원을 기금의 여유재원 외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전입금으로 정해놓고 있음(실제로 일반회계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전출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하더라도)
- 국민체육센터 또는 노인문화회관 등 막대한 사업비가 필요한 경우
 - 1) 국민체육센터기금을 설치한 후 일반회계 예산을 전입받는 것이 맞는지
 - 2) 통합관리기금의 재원 내용처럼 직접 일반회계 예산을 전입받아 재원을 누적시켰다가 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업에 대해 용자를 해 주면 되는지

A 회신내용

- 통합관리기금은 자치단체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용



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토록 한 것임

- 재정용자는 기금회계에서 다른 회계(일반, 특별회계)로 용자해주는 것을 말하며 특정 사업에 용자해 주는 것은 아님
 - 1) 기금사업으로 국민체육센터를 건립코자 한다면 먼저 동 사업의 목적에 적합한 기금을 설치하여야 함
 - 수년간의 조성과정을 통해 사업을 시행코자 한다면 일반회계에서 센터기금으로 전입을 받은 후 통합관리기금으로 용자해 준 후, 사업을 시행코자 하는 시점에서 다시 통합관리기금에서 용자금을 회수하여 사업을 시행하면 됨
 - 2) 통합관리기금을 일반사업에 대하여 용자해 주는 것은 불가하며, 이는 기금목적사업에 위반하여 집행할 수 없기 때문임
 - 따라서 기금으로 센터를 건립코자 한다면 상기 답변 1)처럼 하여야 하며 일반회계에서 단순히 통합관리기금으로 전입받아 센터를 건립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